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급식운영예산 세출과목 부적정 집행

관계기관 가좌초등학교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목그룹] ‘인건비’-[목] ‘인건비’-[세목] ‘무기계약직보수’-[원가통계비목] ‘무기계약직원인건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직원 인건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가좌초등학교에서는 [목] ‘인건비’-[세목] ‘무기계약직보수’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표】 세출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과 같이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세출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회계연도	결의일자	결의제목	세목	결의금액(원)
2021	2022-02-28	급식실 가림판 부품 구입	인건비	275,000
2021	2022-03-07	급식실소모품구입	인건비	2,283,210
2021	2022-03-07	[급기구 개선사업] 급식실 이동식 애벌세정대 구매	인건비	4,550
2021	2022-03-08	급식실 세척기 세제 구입	인건비	1,485,700
합계(4건)				4,048,460

[조치할 사항]

관련자 3명은 ‘주의’ 처분하오니, 가좌초등학교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표】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현황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가좌초등학교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복무제도」에 따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원은 그에 따른 연차일수를 부여받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기가 끝난 이후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좌초등학교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보상비를 가산하여 과오지급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미지급하고 퇴직 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성명	직급	지급 기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기지급)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정당지급)	기지급액 (원)	정당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	○○○○ ○○○○	2020.1.1.~ 2020.12.31.	1일	0일	103,200	-	103,200
○○○	○○○○ ○○○○	2020.1.1.~ 2020.12.31.	9일	6일	676,290	450,840	225,450
○○○	○○○○ ○	2018.9.1.~ 2021.2.28.	49일	48.5일	2,773,280	2,642,060	131,220
합 계					3,552,770	3,092,900	459,870

[조치할 사항]

- ① 관련자 3명은 ‘주의’ 처분하며, 과오지급된 459,8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가좌초등학교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채용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가좌초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력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가좌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채용계약서상 임용일 이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1】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현황

임용 대상자	구분	임용기간	성범죄경력 조회일	아동학대 전력 조회일
○○○	조리실무사	2021.03.01. ~ 2021.04.02. 2021.04.05. ~ 2021.08.31.	2021.03.11.	2021.03.11.
○○○	시설미화원	2021.03.02. ~ 2021.03.12.	미 실시	미 실시
○○○	시설보조원	2021.03.05. ~ 2021.06.30.	2021.03.15.	2021.03.15.
○○○	조리실무사	2021.05.14., 2021.05.28.	미 실시	미 실시
○○○	조리실무사	2022.04.19. ~ 2022.04.21.	2022.05.04.	2022.05.04.

[조치할 사항]

관련자 2명은 ‘주의’ 처분하오니, 가좌초등학교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운영

관계기관 가좌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 및 「교육부 훈령 제393호」 제19조(자료의 정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좌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기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있다.

【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운영 내역

건명	기간	건수	관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2020.12.24.~2021.2.1.	49	미운영

[조치할 사항]

관련자 1명은 ‘주의’ 처분하오니, 가좌초등학교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